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동 길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동법 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에 한하여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의회의 의결로서 ‘동의’를 얻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